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통 합 방 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경두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지방보훈청장, 지방병무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관할 시·도 및 시·군·구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한 것을 기관의 편성과 역할을 고려하여 시·도 협의회와 시·군·구 협의회로 구분하여 참석토록 하고,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경계협정서 체결 시 시설관리자가 관할지역의 구분에 따라 군 관할지역은 지역책임부대장과 경찰 관할지역은 경찰서장과 체결하던 것을 실질적인 방호를 위해 관할 구분 없이 시설관리자·군·경찰이 공동으로 체결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대통령령 제 호

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8호 “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”을 “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및 관계자”로, 같은 항 제9호 “지방병무관서의 장”을 “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및 관계자”로, 같은 항 제12호 “지방소방관서의 장”을 “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”으로 수정한다.

제21조제3호 중 “부대장(경찰관할지역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을 말한다)”을 “부대장, 경찰서장”으로 수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지역협의회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 1. ~ 7. (생략)	제8조(지역협의회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 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</u>	8. <u>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및 관계자</u>
9. <u>지방병무관서의 장</u>	9. <u>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및 관계자</u>
10. ~ 11. (생략)	10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<u>지방소방관서의 장</u>	12. <u>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</u>
13. ~ 14. (생략)	13. ~ 1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생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32조(국가중요시설의 경비·보안 및 방호)	제32조(국가중요시설의 경비·보안 및 방호)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관리자와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(경찰관할지역의 경우에는 <u>경찰서장을 말한다</u>)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 문답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,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.	3. ----- -- <u>부대장, 경찰서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	
연 락 처	(02) 748 - 3461